<2027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 기본 이론서> 정오표

초판 발행(2026. 5. 11) 기준

개정 법령 반영하면서 편집하면서 부정기 재심사 사유(형집행법 제67조 제3호)가 빠져서 추가합니다.

수정 페이지	수정 사항	수정 전	수정 후
345p	⑵ 부정기재심사(시행규칙 제67조)	[부정기 재심사 사유](시행규칙 제67조) 1.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. 수형자가 화재, 수용자의 도주.폭행.소요.자살,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(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)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(이하 "교정사고"라 한다)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4.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(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)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. 수형자가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,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,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.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	[부정기 재심사 사유](시행규칙 제67조) 1.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. 수형자가 화재, 수용자의 도주.폭행.소요.자살,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(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)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(이하 "교정사고"라 한다)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.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 한 때 4.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(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)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. 수형자가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,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,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.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